

순자본비율 및 잉여자본 공시

단위 : 백만원

구분	2025.12	2026.03
영업용순자본(A)	134,905	149,505
총위험액(B)	30,499	38,720
필요유지자기자본(C) ¹⁾	11,200	11,200
순자본비율 ((A-B)/C*100) ²⁾	932.19%	989.15%
잉여자본(A-B)	104,406	110,785

1) 인가업무 및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의 70%임

2) 2016년부터 순자본비율 산출(분기단위) 시행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3장 제1절 제30조 (재무건전성 유지)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